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 항 시 설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755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체금을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연체금의 한도를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11. ~ 7. 21.), 재입법예고(2025. 7. 3.
~ 7.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로 한정한다)가 연체이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금을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

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41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로, “사용료의 징수”를 “사용료·연체금의 징수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4(사용료의 징수 등) ①</u> <u>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연</u> <u>체금은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u> <u>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u> <u>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u> <u>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u> <u>리·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u> <u>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u> <u>로 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 또는</u> <u>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u> <u>자(「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u> <u>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u> <u>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u> <u>항공사로 한정한다)가 연체이자</u> <u>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u> <u>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u> <u>②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u> <u>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u> <u>의 100분의 30으로 한다.</u> <u>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u> <u>관리·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u> <u>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할</u> <u>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u> <u>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간을</u>

정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
료와 연체금을 내지 않은 때에
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
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
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
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
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한
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
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
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
 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
 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
 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
 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1. ~ 40의3. (생략) 41. <u>법 제32조제1항</u>에 따른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u>사용료의 징수</u> 42. ~ 67. (생략) ② ~ ④ (생략)	1. ~ 40의3. (현행과 같음) 41. <u>법 제32조</u>----- ----- ----- <u>사용료·연체금의 징수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u> 42. ~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189